

의안번호	2217864
의 퇴 인	박희승의원
회 답 일	2026.7.1.
추계번호	26C178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9조의2 (상병급여)	○ 공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에게 상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제1항) 1.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업무를 하지 못하거나 업무시간이 감소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손실이 발생한 가입자 2.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또는 노령에 따른 돌봄으로 인하여 업무를 하지 못하거나 업무시간이 감소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손실이 발생한 가입자 3. 본인의 배우자 또는 친족(4촌 이내의 친족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본인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이 감소하여 사업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 국가는 상병급여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함에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제2항)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49조의3 (상병급여의지급신청 및 지급기간등)	○ 상병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가입자는 공단에 상병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병급여의 지급 여부, 지급 기간 및 지급액을 결정하여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항) ○ 상병급여의 지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제2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추가적인 치료 또는 돌봄이 필요하여 상병급여의 지급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병급여의 총 지급 기간은 가입자 1인당 최대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제3항) ○ 공단은 상병급여의 지급 신청 접수, 상병급여의 지급 연장 신청 접수, 상병급여 지급 인정 여부의 판단 및 상병급여 지급 연장 인정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4항) ○ 제1항에 따른 상병급여 지급 신청 및 통지, 제3항에 따른 상병급여 지급 기간의 연장 신청, 제4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제49조의4 (상병급여액)	○ 상병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제1항) 1. 가입자의 소득 손실이 발생하기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12개월동안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월별 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의 1천분의 667 2. 가입자의 소득 손실이 발생하기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6개월동안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의 1천분의 667 ○ 상병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상병급여일액을 제2호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제2항) 1. 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2. 가입자의 소득 손실이 최초로 발생한 날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병급여 지급 기간 동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병급여로 지급한다.(제3항)	의무규정
4	제108조의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제3항)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u>상병급여는 제외한다.</u>) ○ 국가는 공단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상병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제5항)	의무규정
5	제49조의6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 상병급여를 신청하는 가입자는 상병급여의 신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제1항) ○ 공단은 가입자가 제1항에 따라 상병급여의 신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동시에 한 경우 가입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대신 지급한다.(제2항) ○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대신 지급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한 이후 가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대신 지급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제3항) ○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대신 지급한 이후 가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신 지급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가입자에게 융자한다.(제4항)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9조의2 (상병수당)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9조의3 (상병급여의 지급 신청 및 지급 기간 등)	
3	제49조의4 (상병급여액)	
4	제108조의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5	제49조의6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병급여를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와 이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은 본인의 질병·부상 또는 피부양자의 질병·부상·노령에 따른 소득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병급여를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 총지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 건강보험 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님¹⁾. 다만, 건강보험 추가지출만큼 건강보험료 수입액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²⁾,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추가지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로 볼 수 있음³⁾⁴⁾
 - － 또한, 개정안은 상병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는 ① 건강보험 지출 증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과 ② 상병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상병급여에 대한 정부지원)의 합으로 구성됨
-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상병급여의 수급 대상·수급액·수급 기간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이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상병급여가 신청 기반 제도로써 현시점에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여 추계가 곤란함
 - (수급 기간) 개정안은 상병급여의 지급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

1)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비용추계’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보험 재정 자체는 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국고지원 금액만 그 대상이 됨

2) 건강보험료를 결정 절차에 따르면 먼저 건강보험 지출 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 건강보험료 수입 규모를 추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지출에 따라 건강보험 수입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서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단,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4) 2023~2025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평균 14%를 일반회계 및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였음

나, 안 제49조의3제3항에 따라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지급 기간은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수급 대상)** 개정안은 수급 자격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급여액)** 상병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상병급여일액은 개인의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시점에 그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움
 - － 상병급여일액은 ① 소득 손실이 발생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12개월동안의 근로소득·사업소득 평균의 66.7%와 ② 소득 손실 발생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6개월동안의 근로소득·사업소득 평균의 66.7% 중 큰 금액으로 함
 - － 다만, 위 금액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병급여일액으로 함
- 한편,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법 제50조⁵⁾에 따라 2022년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현재 2단계, 3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음([표 1] 참조)
 - －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급여 지원 명목으로 2026년 기준 43억원을 예산으로 배정하였음
-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신청 건수 및 지급 건수 등은 모형(정책·정률)마다 상이하며, 시범사업 평가 결과와 향후 본사업 설계 유형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 정부는 당초 2025년 상병수당 본사업 도입을 발표하였으나,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년 2월)에서 이 시기를 2027년으로 연기하였음

5)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따라 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음

[표 1]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구분	내용		
소관부처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기간	○ 2022년~		
지원 대상자	○ 1단계 6개 지역(경기 부천, 충남 천안, 서울 종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22.7월~'24.12월) ○ 2단계 4개 지역(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용인, 전북 익산):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자('23.7월~) ○ 3단계 4개 지역(충북 충주, 충남 홍성, 전북 전주, 강원 원주):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24.7월~) ※ 3단계 지역은 '25.5월 정률제 시행 및 소득기준 폐지		
지원 기준	구분	모형	내용
	1단계 (보편)	정액	①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②3일(순천·창원), 7일(부천·포항), 14일(종로·천안)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③최대 120·150일(종로·천안)까지 상병수당 지급('24.7월 이전 90·120일)
	2단계 (선별)	정액	①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②7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③최대 15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3단계 (보편)	정률	①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②7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③최대 15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지원 금액	○ 일 48,150원(2025년 최저임금의 60%), ※ 3단계 지역의 정률제 대상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직전소득의 60% 지급(하한 48,150원~상한 66,000원)		
지원 기간	○ 시범사업 기간 동안 최대 150일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또한, 안 제49조의6에 따라 공단이 가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본인일부 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선지급하거나 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낮은 금액으로 융자할 경우, 추가적인 행정·운영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 그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제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